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안 번 호 1131 제출연월일: 2024. 6. 28.

제 출 자:정 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공사업의 양도, 합병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공사업을 경영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률 제 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78조제1항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의3.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공사업을 경영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74조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제74조(벌칙)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			
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u><삭 제></u>		
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			
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공사업을 경영한 자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제7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제78조(과태료) 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		
1. ~ 3의2. (생 략)	1. ~ 3의2. (현행과 같음)		
3의3. 제17조제1항제3호를 위반	3의3.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고		
하여 공사업 상속의 신고를	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하지 아니하고 공사업을 경영	<u>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공사업</u>		
<u>한 자</u>	을 경영한 자		
4. ~ 9. (생 략)	4. ~ 9.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